의안번	<u></u>	에 769 호
의	결 년	월 일
연 월 9	일 (제 회)

충청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청북도지사
제출연월일	2021년 6월 30일

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침

충청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 769 제출연월일 : 2021년 6월 30일 제 출 자 : 충 청 북 도 지 사

1. 제안사유

○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수량에 대한 인용 조항 오기사항을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인용 조항 오기사항 정정(제8조제1항)
 - 제6조제1호 각 목 → 제6조 각 호
- 3. 의안전문 : 붙임
- 4. 신ㆍ구조문 대비표 : 붙 임
- 5. 관계법령 발췌 : 붙 임
- 6.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충청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 중 "제6조제1호 각 목"을 "제6조 각 호"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충전시설 설치 수량 등) ①	제8조(충전시설 설치 수량 등) ①
<u>제6조제1호 각 목</u> 에 해당하는 시	제6조 각 호
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의	
수량은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총	
수를 200으로 나눈 수 이상으로 한	
다.	

관계법령 발췌

□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

제11조의2(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등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관계 법령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

- 1.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
- 2. 공동주택
- 3. 특별시장·광역시장,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, 특별자치시장, 시장 ·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
- 4.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 ·시설 및 그 부대시설
- ②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의 종류와 설치수량은 대상시설의 규모,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③ ~ ⑥ 생략

□ 충청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

제6조(충전시설 설치대상)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18조의4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100개 이상을 갖춘 시설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

- 1.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「건축법 시행령」제3조의5 및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시설
 - 가. 제1종 근린생활시설

- 나. 제2종 근린생활시설
- 다. 문화 및 집회시설
- 라. 판매시설
- 마. 운수시설
- 바. 의료시설
- 사. 교육연구시설
- 아. 운동시설
- 자. 업무시설
- 차. 숙박시설
- 카. 위락시설
- 타. 자동차 관련 시설
- 파. 방송통신시설
- 하. 발전시설
- 거. 관광 휴게시설
- 2. 「건축법 시행령」제3조의5 및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다음 각 목의 시설
 - 가.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
 - 나. 기숙사
- 3. 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가 설치한 「주차장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
- 제8조(충전시설 설치 수량 등) ① 제6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의 수량은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총 수를 200으로 나는 수 이상으로 한다.
 - ② 주차장 주차단위구획이 1,000개 이상인 시설의 경우 급속충전시설을 1기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제6조제3호에 따른 주차장의 경우 전체 충전시설의 50퍼센트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.
 - ③ 제1항에 따른 충전시설 설치 수량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소수점을 반올림하여 계산한다.